

투자 위험 등급 4 등급 [보통 위험]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트러스톤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4 등급(보통 위험)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이 투자위험 등급은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것으로 판매회사의 분류 등급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이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이며, 채권관련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는 자투자신탁으로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자본이득 및 이자수익을 추구하나 주식의 가격 변동, 이자율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이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요약정보는 트러스톤 백년 30 EMP 자산배분 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요약한 핵심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이전에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약정보]

투자목적 및 투자전략	이 집합투자기구는 자산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최적의 자산배분을 결정하여 낮은 변동성과 장기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합니다.										
분류	투자신탁, 증권(채권혼합-재간접형), 개방형(중도환매가능), 추가형, 종류형, 모자형										
투자비용	클래스 종류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및 총보수(%)					1,000 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비용 예시 (단위:천원)				
		판매 수수료	총보수	판매보수	동종유형 총보수	총 보수 · 비용	1 년	2 년	3 년	5 년	10 년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납입금액의 0.6%이내	0.630	0.400	0.910	1.130	178	300	427	696	1,464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	0.930	0.700	1.220	1.430	150	306	466	805	1,761
	수수료선취-온라인(Ae)	납입금액의 0.25%이내	0.410	0.180	0.600	0.910	120	219	323	542	1,172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	0.580	0.350	0.780	1.080	113	231	354	613	1,353
(주 1) '1,000 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비용 예시'는 투자자가 1,000 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향후 투자기간별 지불하게 되는 총비용(판매수수료 +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선취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은 일정하고,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로 가정하였습니다.											
(주 2)종류 A 형과 종류 C 형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2년이 경과되는 시점이며 종류 Ae 형과 종류 Ce 형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 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2년이 경과되는 시점이나 추가납입, 보수 등의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 3)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구체적인 투자비용은 투자설명서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중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35 페이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 4) '동종유형 총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2024.8.30 기준)											
투자실적 추이 (연평균 수익률)	(단위 : %)										
	종류	최초 설정일	최근 1 년 23.6.28 ~24.6.27	최근 2 년 22.6.28 ~24.6.27	최근 3 년 21.6.28 ~24.6.27	최근 5 년 19.6.28 ~24.6.27	설정일 이후~ 24.6.27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C)	2017.6.28	6.48	3.15	-1.29	1.80	1.87				
	수익률 변동성		5.82	6.12	5.93	7.64	6.72				
(주1) 비교지수 : 이 투자신탁은 투자전략의 특성상 비교 가능한 지수가 없어, 비교지수를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주 2)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기간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집합투자기구 총비용 지급후 해당기간 동안의 세전평균 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 3) 수익률 변동성(표준편차)은 해당기간 펀드의 연환산 주간수익률이 평균수익률에서 통상적으로 얼마만큼 등락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로서, 변동성이 높을수록 수익률 등락이 빈번해 펀드의 손실위험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운용펀드 기준)											

		결과적으로 타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투자신탁의 투자자는 직접 자산을 투자하는 투자신탁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기회비용과 손실을 부담할 위험이 있습니다.
	ETF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의 투자대상인 ETF(Exchange Traded Funds)는 상장폐지위험, 추적대상지수에 대한 추적오차발생위험, 거래규모 및 기초자산의 유형에 따른 유동성위험, 종가와 NAV(순자산)의 괴리 위험, 설정/환매 시 세금부담위험, 추적대상지수의 산출 방식 변경 및 중단 위험 등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펀드의 가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계량 모델 위험	이 투자신탁은 종목선정 등 투자신탁의 운용과정에서 계량모델을 활용합니다. 그러나, 시장 상황 등에 따라 이러한 계량 모델을 활용한 운용전략을 수행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계량모델의 경우 과거 데이터를 사용하므로 실제 시장 상황과 괴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환율변동 위험	이 투자신탁은 해외에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원화(KRW)와 투자대상국 통화간의 환율변동에 따라 투자자산의 가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외화투자자산의 가치가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원화와 투자대상국 통화간의 상대적 가치 변화로 인해 투자 시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음을 의미합니다. 다만, 이 투자신탁은 외국 통화 대비 원화 환산가치의 하락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모투자신탁의 국가별 외국 통화 표시 자산의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해 환헤지 전략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환헤지가 불가능한 통화이거나 보유 비중이 낮은 통화 자산인 경우 환헤지 전략이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신탁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외국 국가 통화 간의 환율변동위험에는 노출됩니다. 또한 환헤지 거래상대방의 거래불능 상황 또는 해당 통화의 거래가 일시적 혹은 상당기간 시장에서 거래되지 못하는 상황 등 환헤지 전략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헤지 거래가 전액 실행되지 못하거나 환율변동 위험이 감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편, 환헤지를 하는 경우에도 보유자산의 가치변동으로 인해 헤지비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는 순자산가치의 규모, 유동성 비율 등 집합투자기구의 운용현황을 고려하여 환헤지 전략의 효과적인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환헤지를 수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환헤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거래수수료 등의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합니다.
	국가위험	이 투자신탁은 해외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타 집합투자기구의 투자 대상 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또한 정부정책 및 제도의 변화로 인해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외국인에 대한 투자제한, 조세제도 변화 등의 정책적 변화 및 사회전반적인 투명성 부족으로 인한 공시자료의 신뢰성 등의 위험도 있습니다. 특히 일부 신흥시장의 투자하는 경우 외국인의 투자 한도, 넓은 매매호가 차이, 거래소의 제한된 개장시간과 거래량 부족 등으로 인하여 유동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선진국가, 글로벌 시장에 투자하는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투자대상 국가의 위험에 크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매입 방법 환매 수수료	소규모에 따른 모투자신탁 변경 위험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성과보수를 수취하거나, 고유재산 투자금이 일정 액수 이상인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2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또는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성과보수를 수취하거나, 고유재산 투자금이 일정 액수 이상인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2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모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수익자총회 없이 해지되거나, 신탁계약 변경을 통하여 모투자신탁은 「트러스트 다이내믹 코리아30 증권모투자신탁[채권혼합]」으로 전환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17 시 이전: 3 영업일 기준가격으로 매입 · 17 시 경과후 : 4 영업일 기준가격으로 매입 해당사항 없음	환매 방법 · 17 시 이전: 5 영업일 기준가격으로 7 영업일에 지급 · 17 시 경과후: 6 영업일 기준가격으로 8 영업일에 지급

기준가	산정방법	- 당일 기준가격 = (전일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 부채총액) / 전일 집합투자기구 총좌수 - 1,000 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			
	공시장소	판매회사 본·영업점, 집합투자업자 (www.trustonasset.com) · 판매회사 ·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dis.kofia.or.kr)에 게시합니다.			
과세	과세대상	과세원칙	세율	과세시기	
	투자신탁	별도의 소득과세부담 없음	-	-	
	수익자	원천징수	15.4%(지방소득세 포함) 단, 연간 금융소득합계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됨	이익금을 지급받는 날	
	과세대상	과세 시기	세율	세제혜택	
	연금저축 클래스 수익자 (Cp, Cp-E, S-P)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으며, 연금저축계좌에서 자금 인출시 과세	1) 연금수령시 과세 연금소득세 5.5~3.3%(나이에 따라 변경, 종합과세 가능) 단, 이연퇴직소득은 3.3% (지방소득세 포함) 2) 연금외수령시 과세 기타소득세 16.5% (지방소득세 포함) 단, 이연퇴직소득은 퇴직소득과세기준 적용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600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산하여 연 900만원 한도로 12%(종합소득금액 4.5천만원 이하 또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5천만원 이하인 경우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연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다만, 「소득세법」 제 59 조의 3 제 1 항제 1 호 및 제 2 호 규정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 ※ 지방소득세 별도	
	퇴직연금 클래스 수익자 (Cp2, Cp2-E)	퇴직연금 수령시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 징수하지 않으며 투자자는 퇴직연금 수령시 관련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여 일반 투자신탁 투자 시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		
	개인연금저축 클래스 수익자 (Cp3, Cp3-E)	연금 수령시	1) 연금 수령시 과세 : 비과세 2) 중도해지 및 연금외의 형태로 수령시 과세 : 15.4%(지방소득세 포함)	저축불입액의 40%(72만원 한도)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 연금저축계좌 관련 세제는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퇴직연금 클래스의 과세관련 자세한 내용은 퇴직연금종합안내(http://pension.fss.or.kr)의 '퇴직연금소개 → 과세제도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 및 각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 정책,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 영향에 대하여 조세전문가와 협의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환절차 및 방법	해당사항 없음			
	집합투자업자	트러스트자산운용(주) (대표번호: 02-6308-0500 / 인터넷 홈페이지 : www.trustonasset.com)			
모집기간	효력발생 이후 계속 모집 가능	모집, 매출 총액	모집규모를 정하지 않고 계속 모집할 수 있음		
효력발생일	2024. 10. 17.	존속 기간	정해진 신탁계약 기간은 없음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www.trustonasset.com), 한국금융투자협회(dis.kofia.or.kr) 인터넷홈페이지 참고				
참조	집합투자업자의 사업목적, 요약 재무정보에 관한 사항은 투자설명서 제 4 부, 집합투자기구의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52 페이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는 판매수수료 부과방식-판매경로-기타 펀드특성에 따라 3 단계로 구분되며, 집합투자기구 종류의 대표적인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종류(Class)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판매 수수료	수수료 선취(A)	집합투자증권 매입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미징구형(C)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2 년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2 년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높은 총비용을 지불 하게 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수수료 미징구(C)	집합투자증권 매입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는 없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선취형(A)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선취형(A)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2 년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2 년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선취형(A)보다 낮은 총비용을 지불 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판매 경로	온라인 (e)	판매회사의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오프라인	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온라인 슈퍼(S)	자산운용사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S 클래스(S-T 및 S-P 클래스 포함)를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것으로서 다른 클래스[가입 자격(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에 제한이 있는 클래스 제외] 보다 판매보수가 낮고, 후취판매수수료를 징구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기타	개인연금 (P)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퇴직연금 (P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IRP)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고액 (I)	법시행령 제 10 조제 2 항에서 규정한 금융기관 및 법시행령 제 10 조제 3 항제 12 호·제 13 호에서 규정한 기금 및 법인, 집합투자기구, 최초 납입금액이 50 억 이상인 법인을 대상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랩(W)	Wrap Account(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를 통해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기구 공시 정보 안내]

- 증권신고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 투자설명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dis.kofia.or.kr), 집합투자업자 (www.trustonasset.com) 및 판매회사 홈페이지
- 정기보고서(영업보고서, 결산서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 자산운용보고서: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 (www.trustonasset.com)
- 수시공시: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 (www.trustonasset.com)